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금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15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4.

발 의 자 : 문금주 · 최민희 · 송옥주
서삼석 · 어기구 · 문대림
박해철 · 이재강 · 정진욱
오세희 · 강준현 · 임미애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지를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토지의 개량시설 및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농지전용 절차를 거친 후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, 축사·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는 그 자체로 농지로 보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 행위가 가능하나, 상대적으로 원상회복이 쉬운 양식장·양어장 등 수산물생산시설은 농지전용을 통해서만 목적 행위가 가능한 실정이어서 육지 양식어업인 등은 양식업 경영과 토지 매매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임.

이에 양어장·양식장 등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고,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 등이 농지

전용허가 등의 행정 절차 없이 양식업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
것임(안 제2조 등).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나목 중 “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”를 “농축산물 생산시설 및 수산물생산시설(양어장·양식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로서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농업경영”을 “농업경영(수산물생산시설 경영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농업경영계획서 또는”을 “농업경영계획서(수산물생산시설경영계획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”으로 한다.

제35조제1항제1호 중 “농축산물 생산시설은”을 “농축산물 생산시설 및 수산물생산시설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연구 시설과 양어장·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”을 “연구 시설”로 한다.

제36조제1항제1호 중 “농축산물 생산시설은”을 “농축산물 생산시설 및 수산물생산시설은”으로 한다.

제49조의2제2호 중 “설치하는”을 “설치하거나 수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”으로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제 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수산물생산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농지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. 가. (생략) 나.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<u>농축산물 생산시설</u>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. ~ 8. (생략) 제6조(농지 소유 제한) ① 농지는 자기의 <u>농업경영</u> 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. ② ~ ④ (생략) 제8조(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-----.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 ----- <u>-농축산물 생산시설 및 수산물 생산시설(양어장·양식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로서</u> ----- ----- 2. ~ 8. (현행과 같음) 제6조(농지 소유 제한) ① ----- ----- <u>농업경영(수산물 생산시설 경영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u> ----- -----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8조(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

제35조(농지전용신고) ① 농지를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
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
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
한다.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

제35조(농지전용신고) ① -----

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농업인 주택, 어업인 주택, 농축산업용 시설(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), 농수산물 유통·가공 시설

2. (생 략)

3.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·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

②·③ (생 략)

제36조(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)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1.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허가

-----.

1. -----

-----농축산물 생산시설 및 수산물생산시설은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연구 시설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36조(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) ① -----

-----.

-. -----

-----.

1. -----

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(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 시설과 <u>농축산물 생산시설</u>은 제외한다)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	----- ----- ----- -----<u>농축산물 생산시설 및 수산물 생산시설</u>은----- ----- -----
2. ~ 5. (생 략) ② ~ ⑤ (생 략) 제49조의2(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)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·구·읍·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. 1. (생 략) 2.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<u>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</u> 3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49조의2(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<u>설치 하거나 수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</u>----- 3. (현행과 같음)